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1가단5121526 판결 [점유회수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나617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1가단5121526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박민호, 이경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준

변론종결 2023. 8. 16.

판결선고 2023. 9. 20.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D 지상 소재 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와의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위 건물 지하 1층 전체를 점유관리하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가 2021. 5. 5.경 원고의 위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지하 1층 F, G호’라 한다)에 대한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하였으므로, 이에 원고는 민법 제204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지하 1층 F, G호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2021. 5. 5. 당시 지하 1층 F, G호를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그와 같은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지하 1층 F, G호 및 피고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그 점유 및 침탈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민정

[별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연립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1224.51㎡

지하2층 1212.72㎡

지하3층 1224.88㎡

1층 631.05㎡

2층 801.58㎡

3층 539.76㎡

4층 539.76㎡

5층 539.76㎡

6층 539.7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지하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50.57㎡

2.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연립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1224.51㎡

지하2층 1212.72㎡

지하3층 1224.88㎡

1층	631.05㎡
2층	801.58㎡
3층	539.76㎡
4층	539.76㎡
5층	539.76㎡
6층	539.7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지하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69.05㎡

끝.

